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3

심의일자	2017.08.22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소공동 부영호텔 신축사업 / 중구 소공동 112-9일원		
의결번호	2017-24-3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+ 교통 심의			
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			
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, 건축법 제4조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의한 경관·건축·교통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			
< 건축 분야 >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계획			
○ 근현대건축물 3번의 측면부는 호텔 파사드 및 호텔 BI는 삭제하고 전면부와 동일한 컨셉으로 입면계획토록 조치하기 바람.			
○ 전면 공개공지 주변(소공로측에서 남대문로5길 사이) 보행통로 환경이 열악하므로, 공개공지의 개방성을 지향하는 외부 공간계획의 개선방안과 건물사이의 보행통로 확폭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.			
○ 공개공지의 이용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상2층(대관정 유구전시장)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의 선형을 개선하기 바람. - 계단(BRIDGE)의 디자인이 환경 조형물화 되도록 계획하기 바람.			
○ 한국은행 부지와 연계 조성되는 공공보행통로는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쾌적하고 보행친화적인 공간으로 계획하기 바람.			
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			
○ BF 인증기준에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진행하기 바람.			
< 교통분야 >			
○ 차량 진입로 곡선반경은 승용차와 버스를 구분하여 설계하기 바람.			
○ 횡단보도 위치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기 바람.			
- 계속 -			

2017. 08. 22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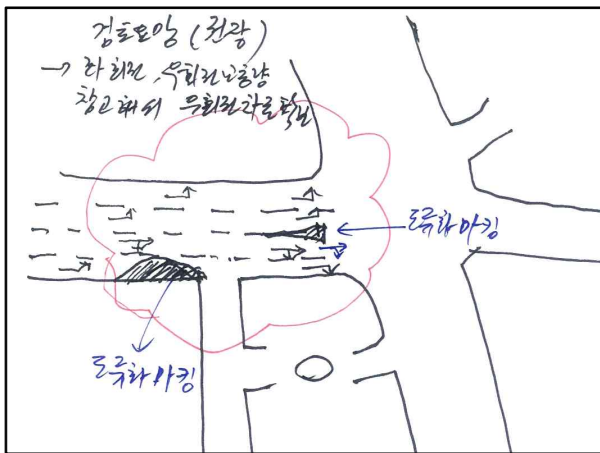
2/3

심의일자	2017.08.22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소공동 부영호텔 신축사업 / 중구 소공동 112-9일원		
의결번호	2017-24-3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
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+ 교통 심의

< 교통분야 >

- 한화빌딩 앞 차로 도류화를 아래 예시(안)과 같이 검토하기 바람.(권장)



- 지상1층 진출구 횡단보도 예고표지는 회전 곡각부 이전 위치에 설치하기 바람.
- 지하4층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안내표지를 보완하여 일반차량의 불필요한 접근을 배제하기 바람.

< 공통사항 >

1.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 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.
 - 가. 녹색건축물 인증 : 우수(그린2)등급 이상
 - 나.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: 2등급 이상
 - 다.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 : $268.55 \text{ kWh/m}^2 \cdot \text{y}$
 - 라. 에너지 성능점수(EPI) : 86점
2.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, 급·배기구,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(SKY VIEW)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.

- 계속 -

2017. 08. 22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3/3

심의일자	2017.08.22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소공동 부영호텔 신축사업 / 중구 소공동 112-9일원		
의결번호	2017-24-3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+ 교통 심의			
< 공통사항 >(계속)			
3. 수돗물 재처리시설(중앙정수처리장치) 설치·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, CO ₂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“불필요한 시설”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.			
4.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(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).			
1) 대지면적 1,000㎡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,500㎡이상의 건축물.			
2)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‘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’을 참고하여 적용.			
5. 『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』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 끝.			

2017. 08. 22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